

고 시

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7-68호

2017. 3. 30.자로 우리구 관내 장위8, 9, 11구역에 대하여 구역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

2017년 5월 11일

성 북 구 청 장

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8, 9, 11 해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

1. 제한지역

장위8구역	장위9구역	장위11구역
· 위 치 : 성북구 장위동 85 알대 · 면 적 : 119,371㎡	· 위 치 : 성북구 장위동 238-83 알대 · 면 적 : 85,878㎡	· 위 치 : 성북구 장위동 68-141 알대 · 면 적 : 159,451㎡

2. 제한기간 : 고시일로부터 11개월(2017.05.11 ~ 2018.03.31)

※ 행위제한 기간 이내라도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될 경우 행위제한을
해제함

3. 제한사유

장위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중으로 개발행위로 인하여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함.

4. 제한대상

- 가)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
- 나)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
- 다) 건축법 제21조에 의한 착공신고

5. 제한 예외대상

- 다음의 사항 중 구청장이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위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법에 의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 보강을 위한 건축 및 대수선 허가(신고)
- 대수선 및 용도변경(건축물대장 전환, 합병, 표시변경 등 포함)

6. 관계도서 : 생략(성북구청 주거정비과 비치도서와 같음)

○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(장위8, 9, 11구역) 도면

